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53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1. 20.

발 의 자 : 김영선 · 김형동 · 조해진
정우택 · 조명희 · 이명수
성일종 · 이종성 · 박형수
김상훈 · 한기호 · 태영호
이달곤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곤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(이하 “징수곤란 체납액”)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. 그러나 소액 체납자들을 특정하여 징수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음.

폐업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도 월평균 수입이 적고 무재산인 영세개업사업자들의 경우, 체납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징수처의 강제징수에 따른 생계 곤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며, 징수처도 실익없는 강제징수로 행정적 낭비만 더하게 되므로 시정이 필요함.

이에, 폐업 후 3년이 경과했고 월평균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무재산인 자 중, 세무 채무 소멸 기간인 5년간 최저임금 총액에 상당하는 소액 체납액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,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영세납세자의 생활안정

을 지원하고자 함(안 제99조의10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”를 “아니하고, 세무 채무 소멸 기간인 5년간 최저임금 총액에 상당하는 소액 채납액이 채납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, 그 거주자에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15억원 미만”을 “15억원 미만이거나, 신청일 직전 3년 월평균 수입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무재산인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5천만원 이하”를 “세무 채무 소멸 기간인 5년간 최저임금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“징수할 수 없는 경우”를 “징수할 수 없고, 신청일 직전 3년 월평균 수입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9조의10(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)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(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)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(이하 이 조에서 “징수곤란 체납액”이라 한다)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<u>아니한</u>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.	제99조의10(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~~아니하고~~ , 세무 채무 소멸 기간인 5년간 최저임금 총액에 상당하는 소액 체납액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, 그 거주자에게 -- ----- -----.
1.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<u>15억원 미만인</u> 사람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15억원 미만이거나, 신청일 직전 3년 월평균 수입금액</u>

2. ~ 4. (생략)

5. 신청일 현재 해당 거주자의
채납액 중 종합소득세(이에
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
함한다) 및 부가가치세의 합
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

6. (생략)

② ~ ⑧ (생략)

⑨ 제1항에서 “징수곤란 채납
액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채납액을 말한
다. 이 경우 거주자가 기준일
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채납
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신
청일 전에 발견한 재산의 가액
및 거주자가 기준일부터 신청
일까지 납부한 금액은 징수곤
란 채납액에서 차감한다.

1.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
당 거주자의 채납액을 징수할
수 없는 경우 그 채납액

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신청
일 현재 무재산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
-----세무 채무 소멸 기간인
5년간 최저임금 총액에 상당
하는 금액 이하-----

6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
⑨ -----

-----.

1. -----
-----징수할
수 없고, 신청일 직전 3년 월평
균 수입금액이 최저생계비 이

2. ~ 4. (생략)	<u>하인 경우</u> -----
⑩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	⑩ (현행과 같음)